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5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3월 6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대상 범위를 수정하고, 조리장 사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함.
- 학교급식점검단 업무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, 위촉 단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함

2. 주요내용

- 학교급식 점검체계 마련에 대한 대상 범위를 수정함 (안 제3조).
- 용어를 정비함(안 제4조).
-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학교급식공급업자”를 “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다만,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위생 감시”를 “학교급식 급식위생·안전 점검 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조사”를 “모니터링”으로 수정한다.

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(수당)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학교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,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</p> <p>제4조(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위생 감시 2.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조사 <p>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 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학교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,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급식위생·안전 점검 지원 2.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 <p>3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수당)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 ~ 제9조 (생략)</p>	<p>제8조 ~ 제10조 (원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급식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급식”이란 「학교급식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.
2. “안전한 식재료”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.
 - 가.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
 - 나. 「식품위생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
3. “학교급식공급업자”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

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·수·축산물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,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
제4조(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) ① 학교급식의 위생·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점검단(이하 “점검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급식위생·안전 점검 지원
2.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
3.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점검단의 구성)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급식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,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·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학부모, 민간인, 유관기관 관계자가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한다.

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6조(점검단의 운영 등) ① 점검단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급식위생·안전 점검 및 급식소, 납품업체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활동한다.

② 교육장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되,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)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공동구매의 활성화)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계 기관과의 협조)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, 서울특별시청, 구청장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